#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16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0000	강유정의원 등 11인	'24.6.3.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2200082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sup>2</sup> 24.8.27.)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2200318 신성범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04 C 11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4.6.11.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sup>2</sup> 24.8.27.)	
	2200647	김윤덕의원 등 11인	'24.6.19.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4.8.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5.)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제28조 등).

#### 법률 제 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제1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 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 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 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를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 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제4호"를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8조제8항 전단 중 "제28조제2호의2"를 "제28조제1항제2호의2"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2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2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5조제3호의2 중 "제28조제4호"를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제28조제7호"를 "제2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 중 "제28조제1호"를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8조제1호"를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8조제5호"를 "제28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8조제6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1조의2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
사항) (생 략) 	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제5호ㆍ제5호의2의 사항 및 같
	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
	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
	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
	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
	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
	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u>&lt;신 설&gt;</u>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
	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
	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
	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

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 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 의무의 이행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 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 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 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 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 등 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 등 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 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 분증 위조 •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8조제1항</u>
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연	령	을
확인	민하지	못한	사정	)이 (	인정:	되	느
때야	ll 는	문화	체육	관광부	부렁.	<u>O</u> j	로
정ㅎ	하는 별	나에 [	다라	해당	행	정기	처
분을	을 면제	메할 수	는 있	다.			

- 1. ~ 5. (생략)
- ③ ~ ⑤ (생 략)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과 장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1. (생략)
- 2. 제28조제4호, 제5호, 제5호의
   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⑦ (생 략)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 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 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 선하거나 그 기기·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 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 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 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⑨ ~ ⑪ (생 략)
- 제39조의2(포상금)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 1. <u>제28조제2호</u>의 규정을 위반 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 려둔 자

제38소(폐쇄 및 구거 등) ① ~ ①
(현행과 같음)
⑧
조제1항제2호의2
<u>.</u>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포상금) ①
· 1. 제28조제1항제2호
1. <u>제20年利1号제2文</u>

2. <u>제28조제3호</u> 의 규정을 위반	2. <u>제28조제1항제3호</u>
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44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u>제28조제2호</u> 의 규정을 위반	1. <u>제28조제1항제2호</u>
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	
려둔 자	
1의2. <u>제28조제3호</u> 의 규정을 위	1의2. <u>제28조제1항제3호</u>
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제28조제4호</u> 의 규정을 위	3의2. <u>제28조제1항제4호</u>
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을 제공한 자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u>제28조제7호</u>에 따른 청소년 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 년을 출입시킨 자

3. ~ 6. (생략)

제48조(과태료) <신 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의7. (생략)
- 3. <u>제28조제1호</u>의 규정을 위반 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 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 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 을 출입시킨 자
- 5. <u>제28조제6호</u>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1. (현행과 같음)
2. <u>제28조제1항제7호</u>
3. ~ 6.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1
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
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u>
<u> </u>
·
1. ~ 2의7. (현행과 같음)
3. <u>제28조제1항제1호</u>
4. <u>제28조제1항제5호</u>
5. 제28조제1항제6호
O. 11204-111 0 1104-

차단 프	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
치하지	아니한	자		

# 6. ~ 8. (생략)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 수한다.

6. ~ 8.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